

#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형 진\* · 서 고 은\*\*

<차례> \_\_\_\_\_

- |              |          |
|--------------|----------|
| I. 들어가며      | IV. 개선방안 |
| II. 대상판결의 검토 | V. 마치며   |
| III. 외국 입법례  |          |
- 

주제어 : 상해, 상해보험, 면책약관, 담보배제사유, 책임면책사유, 마약, 약물중독, 자해, 자살, 중과실, 약관개정

<국문초록> 음주 무면허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한정적 무효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각종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마약·약물중독 면책약관’,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면책약관’ 등과 같은 보험자 면책사유가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불량위험이나 고도의 위험행위에 대하여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이 유발되었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해보험에 대해 중과실 면책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을 인보험으로 보는 상법의 체계 및 비정액상해보험(손해보험형상해보험)에만 적용 가능한 중과실 면책의 적용 가능 범위를 고려한다면 당장의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상해보험약관에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해보험약관에 규

\* 삼성화재(주) 수석, 제3종 대인 및 신체손해사정사, 법학박사(Ph.D).

\*\*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강사, 법학박사(Ph.D).

- 논문접수일(2020.09.27), 심사개시일(2020.10.14), 게재확정일(2020.10.29)

정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행위를 면책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마약 투약 후 자해로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그 불법성 및 반사회성을 이유로 ‘마약 복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 하급심 판례와 독일 및 일본의 상해보험약관상 마약 관련 면책사유의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마약은 환각 또는 환청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해 및 타해를 유발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있어 마약 투약 행위가 지속되면 보험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마약 투약은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마약 복용 행위’는 반드시 상해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책사유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면책사유’가 아닌 ‘담보배제사유’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약 복용 행위’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써 상해보험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마약 관련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면책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는 이를 ‘책임면제사유’와 ‘담보배제사유’로 구분하여, 다양한 면책사유들을 체계적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I. 들어가며

사망을 포함한 상해보험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상법 제659조),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는 인보험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sup>1)</sup>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상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즈음까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등 상해담보’에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장기손해보험의 표준약관’에서는 2010년 전까지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폭력행위’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

1)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사망보험의 수익자인 유족의 생활보장 및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고 그 경계가 모호한 점, 보험계약자 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으로 동조에 정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가12 결정 참조).

었다.<sup>2)</sup> 특히,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면책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마약 또는 약물 복용 중 사고”를 별도로 명시한바 있다.<sup>3)</sup>

그런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17591 판결<sup>4)</sup>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의 해석상 ‘한정적 무효’의 입장을 밝힌 이래로, 판례가 일관되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해 한정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해당 면책사유들이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보험사고로 변경되었다.<sup>5)</sup> 이러한 기조 아래 자동차보험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별개로 존재하던 ‘마약·약물중독 면책약관’이 2013년경 삭제되었고, 장기손해보험에서 존재하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면책약관 또한 2010년 4월<sup>6)</sup> 대대적인 약관개정으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sup>7)</sup>

이처럼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에서 실질적으로 고의의 보험사고를 제외한 다른 면책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 음주·무면허 운전 외에도 마약 등의 약물중독, 폭력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자에 대해서는 불량위험의 인수나 범죄행위 또는 고도의 위험행위에 대하여 보험보호를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sup>8)</sup> 한편, 보험의 단체성 측면에서도 보험자의 보

2)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엘림G&P, 2006, 302-303쪽.  
 3) 남원식/김형진/안승태, 「실무자들이 쓴 자동차보험이론」 (개정·증보판), 한울출판사, 2005, 125쪽.  
 4) 과거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同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등).  
 5) 동일한 취지로 최근 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에서도 상해보험의 유형인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일부 감액하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에 대하여 안전띠 미착용이 보험사고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의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6) 당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 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질병·상해보험약관은 2010. 1. 29.에 개정되어, 2010.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2010년 4월 개정약관’이라 칭한다.  
 7) 최병규, “마약투약과 상해사망여부 - 서울중앙지법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229-230쪽 참고  
 8)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2, 273쪽,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296쪽,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에서는 상해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됨으로써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이 유발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하 ‘면책사유’라고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에 더하여, 적어도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의 경우 면책사유를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sup>9)</sup>로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담보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면책사유들이 삭제되면서 상법의 면책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점<sup>10)</sup> 등을 고려하여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상 면책사유를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로 나누어, 질병 및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담보배제사유’로, 위험의 빈도나 심도가 높은 사고 및 불가피한 손해는 ‘책임면제사유’로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sup>11)</sup>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도 특히, 마약이나 약물중독 행위를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하급심 판결, 해외 입법례, 마약의 현황 및 위험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별도로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를 담보배제사유로 보아 당해 면책사유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9)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의 의미 및 구분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 IV. 개선방안 중 2. 마약 관련 면책사유의 규정 및 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0) 현재 생명보험표준약관(2019. 12. 20.) 제5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2019. 12. 20.)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그 외에 상대적 면책사유로 임신·출산, 전쟁·폭동 등과 같은 위험한 활동을 열거하고 있는바, 일단 ‘급격·우연·외래’라는 상해성이 인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담보에 포함시킨 후 면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11) 김형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45쪽.

## II. 대상판결의 검토

### 1. 사실관계

이 사건 계약사항 및 사고사실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2012. 6. 11. 이 사건 피보험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보험자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sup>12)</sup>,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② 당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 ③ 2016. 3. 14. 망인은 필리핀 세부에 간 후 막탄 라푸라푸시 인근 모텔 등을 배회하며 여러 차례 마약(필로폰)을 투약해 왔다.<sup>13)</sup>
- ④ 2016. 3. 23 08:00경 망인이 세부 막탄 국제공항에서 마약투약 및 소지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체포된 후, 필리핀 마약수사국(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PDEA)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후 망인은 2016. 3. 24 00:00경부터 약 3시간가량 환각 상태에 빠져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고, 03:00경 PDEA 수사관이 원고에게 전달해 준 원고의 전화기로 친구와 통화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유치장 내 변기를 부수는 행위, 유치장 간수에게 소변을 보는 행위, 천장에 깨진 변기 조각을 던지는 행위 등의 난동을 부리다가 2016. 3. 24. 04:30경 갑자기 스스로 유치장 철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자해를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 ⑤ 2016. 3. 24. 05:00경 필리핀 마약수사국은 망인을 세부시에 소재한 비센트

12) 사고 당시 39세의 남자(직업 불명)로 법정상속인은 모친(원고)이 유일하다.

13) 당시 駐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세부 분관 보고서에 따르면 駐필리핀 대사관 영사가 망인의 체포 소식을 듣고 PDEA에 출장하여 2016. 3. 23. 15:00경 망인을 접견하였는데, 망인이 약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PDEA의 협조요청으로 출석한 친구 이00로부터 망인이 세부에 들어온 후 거의 매일 마약을 투약해 왔다는 사실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서울출입국 및 외국인청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망인은 성인이 된 이후 8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였고, 2005. 8.부터 2006. 6.까지 약 10개월, 2011. 11.부터 2012. 2.까지 약 4개월간 필리핀에 머문 기록이 확인되었다. 다만, 망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토 메모리얼 의료센터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 안에서도 침대에 누워 계속 난동을 벌이다가 의식을 잃은 후 같은 날 10:00경 사망에 이르렀다.

- ⑥ 필리핀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심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심폐정지’, 선행원인 : ‘발작장애’, 근본원인 : ‘다수의 조직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⑦ 망인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여 망인에 대한 별도의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사항

### (1) 원고의 주장

- ① 망인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마약을 흡입한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이는 본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5조 제1호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 ② 망인은 마약에 의한 발작으로 생긴 다수의 조직 타박상을 원인으로 한 2차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명백히 상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③ 피고가 본 사건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근거로써 제시한 미국의 판례들은 모두 마약의 과다복용에 의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마약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과는 그 사망의 원인이 다르므로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본 사건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④ 본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의도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여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마약의 투약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마약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되

고 불안한 상태에서 자해를 하고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고의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망인이 심신상실 자체를 자의로 야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⑤ 이에 본 사건을 보험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할 선의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심신상실 자체를 자의로 야기한 경우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는 본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면책예외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피고의 주장

- ① 본 사건의 사고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거부함으로써 망인이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마약 투여로 사망하였는지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사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에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만약, 망인이 유치장 철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자해로 인한 두부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망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시점인 2016. 8. 23. 08:00시부터 약 20시간 동안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마약으로부터 깨어나는 단계로 친구와 통화한 후 일정시간 안정을 보이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자신을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행한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설사 망인이 마약에서 깨어나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필로폰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대표적인 각성제로 그 부작용으로서 사망, 자해, 공격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sup>14)</sup>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망인의 행동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지켜야 할 선의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본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④ 한편, 망인이 자해 후 이송된 응급실에서 약 5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는 등 활발한 신체활동을 한 사실로 보아 두부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우연성’을 부정하는 법리가 명확한 미국의 판례<sup>15)</sup> 등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행위는 “고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망인의 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본다면 해도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①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가 갖추어야 할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해행위가 본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③ 만일 망인의 자해행위가 고의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본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보험자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④ 위 단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약투여와 같은 반사회적행위까지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1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drugfree.or.kr/>) 참고

15) *Weil v. Federal Kemper Life Assurance Co.*, 7 Cal.4th 125, 129 (1994); *Hargreaves v. Metropolitan Life Ins. Co.*, 104 Cal.App.3d 701, 709 (1980); *Jackson v. National Life c. Ins. Co.*, 130 Ga.App. 208, 209 (1973); *Lloyd v. First Farwest Life Ins. Co.*, 54 Wn.App. 299, 302 (1989) 참고

### 3. 소송의 경과

#### (1) 제1심<sup>16)</sup>

본 사건 제1심 판결에서는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는 법리 하에 사고 당시 망인이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신적 판단능력이 상당히 미약해진 상태에서 유치장 철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자해를 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재판부는 ①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은 사람의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각성제로서 그 남용 시 사망에 이르거나 자해 및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투약이 금지되어 있고(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sup>17)</sup>), 이에 국가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합부로 흡입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점, ③ 이미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을 한 적이 있는 망인으로서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가 되거나 그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될 위험성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사유는 자살에 대한 고의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당해 보험약관상 면책예외사유는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심신상실로 인해 자해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를 말하는 것일 뿐, 보험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할 선의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심신상실 자체를 자의로 야기한 경우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자해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법률상 금지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스스로 심신상실의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4 판결.

17)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태에 빠뜨려 발생한 이 사건의 사고를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사망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8)</sup>

## (2) 항소심<sup>19)</sup>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① 망인이 필로폰을 과다복용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며 필로폰을 흡입하면서 자해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필로폰을 흡입이나 투약과 연관된 사고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각상태가 되거나 그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심신상실 자체를 자의로 야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망인이 자해에 이른 경우는 면책에 외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본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다시금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주장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에서도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 4. 대상판결의 의미

과거 약물이나 마약중독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구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폭력행위'의 면책사유에 포함시켜 담보배제사유로 해석하였다.<sup>21)</sup> 그런데 2010년 4월 이루어진 대대적인 약관개정으로 동 면책

18) 이 사건 제1심 판결 후 언론 보도된 내용은 국민일보, "법원 '마약 투약 후 자해 사망 보험금 못 받는다'", 2018. 5. 20. 기사(<https://news.v.daum.net/v/20180520195004326>) 참조.

19)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

20) 원고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필리핀 마약수사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망인의 사망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에 통보한 시점이나 내용을 볼 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으로 망인이 자해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1) 광주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14245·14252 판결은 2010년 4월 이전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간호조무사)가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에

사유가 삭제됨으로써 약물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해당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면부책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sup>22)</sup> 그런데 대상판결은 필로폰 투약 후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망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상태의 유무와 관계없이 ① 필로폰의 복용이나 남용 시 사망에 이르거나 자해 및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점, ② 필로폰 투약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심신상실 자체를 자의로 야기한 경우까지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개정약관 시행 후 피보험자의 '마약 복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이자 나아가 담보배제사유로 확인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III. 외국 입법례

여기에서는 ① 독일, 일본이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② 각국의 상해보험 관련 법규에서는 무엇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는지, ③ 각국의 상해보험 관련 약관 중 마약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다고 하였다.

- 22) 부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단17937 판결(상해사망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망인)가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원고(망인의 처)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낮은 높이의 수건걸이에 목을 매 자살하자 원고가 해당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사안의 경우 '망인이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 불안, 심계항진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사망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원고와 다툼하다 폭행한 사실,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환각, 환청 등을 동반하는 중증도의 정신질환은 아니고, 마지막 치료일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이전인 점, 망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폭행을 가한 것인 점, 자살방법이 순간적이고 극단적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확정되었다.

## 1. 독일

### (1) 상해의 개념

독일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게 외부로부터 신체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sup>23)</sup> 이에 따르면 급격하게 외부로부터 신체에 발생한 ‘상해사건’을 통해 피보험자가 의도치 않은 건강상의 피해를 입으면 ‘상해’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즉,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한 외부의 사건일 것’, ‘우연성이 있을 것’,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급격한 외부의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급격함’은 ‘신속함’에 더해 ‘사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즉, 이는 짧게 제한된 시간 안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은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 확대되는 상황을 담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② 급격한 ‘사건’이 ‘외부’로부터 ‘신체’에 작용하여야 한다. 즉, 이는 외부의 힘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로 인해 외부적인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내부적인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의도치 않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우연성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인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한 것은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연성은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피해’는 신체적 온전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

23) VVG §178 Leistung des Versicherers - (2) Ein Unfall liegt vor, wenn die versicherte Person durch ein plötzlich von außen auf ihren Körper wirkendes Ereignis unfreiwillig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rleidet. Die Unfreiwilligkeit wird bis zum Beweis des Gegenteils vermutet(독일보험계약법 제178조(보험자의 급부) 제2항 -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우연하게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우연성은 반대의 입증이 있기까지 추정된다(이필규/최병규/김은경 역,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78쪽); AUB(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 2014 §1.3. (Unfallbegriff) - Ein Unfall liegt vor, wenn die versicherte Person durch ein plötzlich von außen auf ihren Körper wirkendes Ereignis (Unfallereignis) unfreiwillig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rleidet(독일상해보험약관 제1.3조(사고개념) - 사고발생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게 외부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한다) 참고

학적 기술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건강상의 피해가 확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지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sup>24)</sup>

## (2) 독일의 보험계약법

독일보험계약법 제183조<sup>25)</sup>에서는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sup>26)</sup>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보험계약법은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의한 고의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를 면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동법은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sup>27)</sup> 및 피보험자<sup>28)</sup>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아니면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동법은 손해보험과는 달리<sup>29)</sup>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4) 독일 상해보험상의 상해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일석, “미국의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보험”, 「보험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376-379쪽 참고

25) VVG § 183 Herbeiführung des Versicherungsfalles - (1) Der Versicherer ist nicht zur Leistung verpflichtet, wenn im Fall des § 179 Abs. 2 der Versicherungsnehmer vorsätzlich durch eine widerrechtliche Handlung den Versicherungsfall herbeiführt. (2) Ist ein Dritter als Bezugsberechtigter bezeichnet, gilt die Bezeichnung als nicht erfolgt, wenn der Dritte vorsätzlich durch eine widerrechtliche Handlung den Versicherungsfall herbeiführt(독일보험계약법 제183조(보험사고의 초래) 제1항 - 보험자는 제1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불법행위에 의해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제2항 -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그 제3자가 고의로 불법행위에 의해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이필규/최병규/김은경 역, 앞의 책, 79쪽)).

26) 여기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상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27) 여기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신의 상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28) 여기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신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를 모두 의미한다.

29) 독일보험계약법 제81조 제2항에서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VVG § 81 Herbeiführung des Versicherungsfalles - (2) Führt der Versicherungsnehmer den Versicherungsfall grob fahrlässig herbei, ist der Versicherer berechtigt, seine Leistung in einem der Schwere des Verschuldens des

가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3) 독일의 상해보험약관

독일상해보험약관 제5조<sup>30)</sup>에서는 총 12개의 하위규정을 통해 상해보험에 있어 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약관은 다시 제5.1조 이하에서 5개의 하위규정(제5.1.1조 - 제5.1.5조)을 통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보험사고를 규정하고, 제5.2조 이하에서 7개의 하위규정(제5.2.1조 - 제5.2.7조)을 통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건강상의 손상을 규정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서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동약관 제5.1.1조<sup>31)</sup>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조는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의식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약물의 복용과 의식을 손상시키는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들 중에서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는 의식을 손상시키는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sup>32)</sup> 독일상해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마약·약물 흡입 및

Versicherungsnehmers entsprechenden Verhältnis zu kürzen(보험계약자가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보험자는 자신의 급부를 보험계약자의 과실에 상응하여 감액할 권한이 있다(이필규/최병규/김은경 역, 앞의 책, 42쪽).

30) 독일상해보험약관의 편제는 각 조문아래 하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5조의 경우 제5.1조 이하 5개의 하위규정(제5.1.1조 - 제5.1.5조)과 제5.2조 이하 7개의 하위규정(제5.2.1조 - 제5.2.7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AUB(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 2014 §5.1.1 (Ausgeschlossene Unfälle) - Unfälle der versicherten Person durch Bewusstseinsstörungen sowie durch Schlaganfälle, epileptische Anfälle oder andere Krampfanfälle, die den ganzen Körper der versicherten Person ergreifen. Eine Bewusstseinsstörung liegt vor, wenn die versicherte Person in ihrer Aufnahme- und Reaktionsfähigkeit so beeinträchtigt ist, dass sie den Anforderungen der konkreten Gefahrenlage nicht mehr gewachsen ist. Ursachen für die Bewusstseinsstörung können sein: eine gesundheitliche Beeinträchtigung, die Einnahme von Medikamenten, Alkoholkonsum, Konsum von Drogen oder sonstigen Mitteln, die das Bewusstsein beeinträchtigen(독일상해보험약관 제5.1.1조 (제외되는 보험사고) - 의식장애, 뇌졸중, 간질 발작 또는 피보험자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발작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고 의식장애는 피보험자의 수용 및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더 이상 특정 위험상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의식장애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상의 장애·약물의 복용·음주·의식을 손상시키는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사용).

32) 이와 관련하여 해당 면책사유에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로 피보험자에게 의식장애가 발생하지

중독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그런데 실제 독일에서는 마약<sup>34)</sup> 투여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마약 투여를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즉, 마약 투여는 알코올의 영향과 유사하게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억제력과 직·운동능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마약복용 후의 효과를 무시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비례보상<sup>36)</sup>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약물 투여 그 자체는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함으로써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쳐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약물복용설명서 등에 기재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해태를 이유로 중과실비례보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sup>37)</sup>

않고 바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도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노일석, 앞의 논문, 387쪽 참고).

33) 위의 논문, 387쪽 참고

34) 예를 들어,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아편, 마리화나, 헤시시 등을 말한다.

35) 독일은 1921년에 아편법을 제정한 이후, 1971년에 아편법을 마약법(Betäubungsmittelgesetz, BtMG)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1981년 마약법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개정법의 핵심은 인간의 건강보호를 일차적 목표로 하여 기존 처벌위주의 정책에 따른 폐해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 이후 마약법 개정에 있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마약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즉, 독일마약법은 마약남용예방과 치료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마약투여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스스로 마약을 소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건강의 침해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마약의 소비를 위해 무허가로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독일마약법 제29조에 의해 처벌된다(김일옥/김순행/박진실, “독일국가전략의 고찰의 통한 한국마약정책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20, 111-115쪽 참고).

36) ‘중과실비례보상’이란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 경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해 전부 급부이행책임을 부여하고 중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를 완전히 면책하지 않고, 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한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Gesetzes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VVG*, 11., Oktober, 2006, Drucksache 16/3945, S. 123-124; 최병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1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77쪽, 김은경,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08, 71쪽, 김형진, 앞의 논문, 156쪽).

37) Meschkat/Nauert, *VVG-Quoten Leistungskürzung in der Sach- und Kaskoversicherung sowie KH-Regress*, Lucherhand, 2008, S. 9.

## 2. 일본

### (1) 상해의 개념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해보험이 생명보험과 동일하다고 보지만, 인간의 생사만을 보험사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해보험이 생명보험과 다르다고 본다. 즉,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해보험은 ① 상해의 경우 그 발생이 불확실한 점, ② 상해로 인한 결과의 태양이나 정도가 불확정적인 점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 유사한 면모가 존재한다고 본다. 한편, 일본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sup>38)</sup> 즉,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상’, ‘우연상’, ‘외래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급격상’이란 원인사고로부터 결과(상해)의 발생까지 시간적 간격이 없거나 그 간격이 지극히 짧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는 급격한 사고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다음으로 ‘우연상’이란 피보험자가 사고원인으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손해보험계약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연상’<sup>39)</sup>과 구별하기 위해 이를 ‘우발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곡으로의 추락사고나 화재에 의한 화상 등은 우연성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자해에 의한 사망이나 상처 등은 그 결과가 피보험자의 예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sup>40)</sup>

마지막으로 ‘외래상’이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신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원인에 따른 사고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질병보험과 그 보장범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 때 외래성 요건

38) 일본의 보험실무상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상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그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각종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일정한 것을 ‘뜻밖의 사고’라고 정의하여, 이에 따라 발생한 사망·장해·입원 등을 급부사유로 정하는 것이 많다(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説』, 有斐閣, 2010, 149頁).

39)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우연상’이란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 있어 장래를 향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가 미확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40) 大阪高裁 昭和62年(1987) 4月 30日 昭和61年(平)第1907号·『判例時報』 第1243号, 120頁 참고

과 관련하여 질병이 아니라는 소극적 증명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요구하거나, 질병면책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가 주장·증명해야 할 면책사유의 유무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sup>41)</sup>

## (2) 일본의 보험법

일본보험법 제80조<sup>42)</sup>에서는 상해질병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sup>43)</sup> 그리고 전쟁이나 기타 변란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 및 질병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 등을 받은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sup>44)</sup>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자해행위나 약물중독은 동조에 따라 면책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일본보험법은 사망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면책만 인정하는 반면(일본보험법 제51조<sup>45)</sup>), 상해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면책에

41) 山下友信, 「保險法」(第4版), 有斐閣, 2019, 358-361頁 참고

42) 保險法 第八十條 (保險者の免責) - 保險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保險給付を行う責任を負わない。ただし、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は、給付事由を發生させた保險金受取人以外の保險金受取人に對する責任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一 被保險者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給付事由を發生させたとき。二 保險契約者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給付事由を發生させたとき(前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三 保險金受取人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給付事由を發生させたとき(前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四 戦争その他の變亂によつて給付事由が發生したとき(日本保險法 第80조 (보험자의 면책) - 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부를 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금부사유를 발생시킨 보험수익자 이외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부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제2호 -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부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전 호에 열거된 경우는 제외함), 제3호 -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부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전 2호에 열거된 경우는 제외함), 제4호 - 전쟁이나 기타 변란에 의해 금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4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포함한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에 대한 기대가 손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과실을 면책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견해가 존재한다(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解説保險法」, 弘文堂, 2009, 83頁).

44) 이와 관련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② 사망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본다(위의 책, 83頁).

45) 保險法 第五十一條 (保險者の免責) - 死亡保險契約の保險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保險給付を行う責任を負わない。ただし、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は、被保險者を故意に死亡させた保險金受取人以外の保險金受取人に對する責任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一 被保險者が自殺をし

더해 피보험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초래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46)</sup>

중과실 면책에 있어서 ‘중과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sup>47)</sup> 및 다수설<sup>48)</sup>은 일반 민사법상의 중과실의 의미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례<sup>49)</sup>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행위한 것을 의미한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거의 고의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부주의를 행한 것을 말한다.<sup>50)</sup>

### (3) 일본의 상해보험보통보험약관

일본상해보험보통보험약관은 제3조<sup>51)</sup>와 제4조를 통해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

- 
- たとき。二 保険契約者が被保険者を故意に死亡させたとき（前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三 保険金受取人が被保険者を故意に死亡させたとき（前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四 戦争その他の変亂によって被保険者が死亡したとき(일본보험법 제51조(보험자의 면책) - 사망보험계약자의 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부를 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보험수익자 이외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제2호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전 호에 열거된 경우는 제외함), 제3호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전 2호에 열거된 경우는 제외함), 제4호 - 전쟁이나 기타 변란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46)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433, 437頁 참고
- 47) 東京地判 平成15年(2003) 6月 23日 平成13年(ワ)第3604号「判例タイムズ」第1141号, 227頁; 大阪高裁 平成元年(1989) 12月 26日 平成1年(ネ)第703号「判例タイムズ」第725号, 210頁; 東京高裁 平成4年(1992) 12月 25日 平成2年(ネ)第2929号「判例タイムズ」第858号, 243頁.
- 48) 戸出正夫, “商法第641條所定の重過失の意味”, 「石田満先生還暦記念論文集: 商法 保險法の 現代的課題」, 文眞堂, 1992, 304頁.
- 49) 日本最判 昭和32年(1957) 7月 9日 昭和 27年(オ)第884号「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第11卷 第7号, 1203頁; 日本最判 昭和51年(1976) 3月 19日 昭和47年(オ)第541号「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第30卷 第2号, 128頁.
- 50) 山下友信, 앞의 책, 355頁.
- 51) 傷害保險普通保險約款 第3條 (保險金を支拂わない場合-その1) - (1) 当會社は,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由によって生じた傷害に對しては, 保險金を支拂いません. ① 保險契約者(注1)または被保險者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 ② ①に規定する者以外の保險金を受け取るべき者(注2)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 ただし, その者が死亡保險金の一部の受取人である場合には, 保險金を支拂わないのはその者が受け取るべき金額に限ります. ③ 被保險者の自殺行爲, 犯罪行爲または闘争行爲 ④ 被保險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間に生じた事故 ア. 法令に定められた運轉資格(注3)を持たないで自動車等を運轉している間, イ. 道路交通法昭和35年法律第105号)第65條(酒氣帶び運轉等の禁止)第1項に定める酒氣を帶びた状態で自動車等を運轉している間, ウ. 麻薬, 大麻, あへん, 覺せい劑, シンナー等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轉ができないおそれがある狀

자의 면책사유를 상세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 특수한 상황(운동이나 경기 등)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동약관 제4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보험자 면책사유를 규정한 동약관 제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보험법 제80조 제1호에서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의·중과실 면책사유는 동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 등 면책사유는 동약관 제9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약관의 나머지 면책사유들 중 피보험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제3호는 피보험자의 자살행위와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제4호는 피보험자가 음주, 약물 흡입상태에서 운전하는 동안의 사고, 제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및 심신상실,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제7호는 피보험자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나 그 의료처치, 제8호

---

態で自動車等を運轉している間 ⑤ 被保險者の腦疾患, 疾病または心神喪失 ⑥ 被保險者の妊娠, 出産, 早産または流産 ⑦ 被保險者に對する外科的手術その他の医療處置. ただし, 外科的手術その他の医療處置によつて生じた傷害が, 當會社が保險金を支拂うべき傷害の治療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 保險金を支拂います. ⑧ 被保險者に對する刑の執行, ⑨ 戦争, 外國の武力行使, 革命, 政權奪取, 内亂, 武装反亂その他これらに類似の事變または暴動(注4) ⑩ 地震もしくは噴火またはこれらによる津波 ⑪ 核燃料物質(注5)もしくは核燃料物質(注5)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注6)の放射性, 爆發性その他の有害な特性またはこれら特性による事故 ⑫ ⑨から⑪までの事由に隨伴して生じた事故またはこれらに伴う秩序の混亂に基つて生じた事故 ⑬ ⑪以外の放射線照射または放射能汚染(注7) 일본상해보험보통보험약관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제1) 제1항 - 당 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호 - 보험계약자(주1)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2호 -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자(주2)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만, 그가 사망보험금의 일부의 수익자인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은 그 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한합니다. 제3호 - 피보험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제4호 -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주3)을 가지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동안, 나.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65조 (음주운전 등의 금지) 제1항에서 정하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동안, 다.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시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동안, 제5호 -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제6호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조산 또는 유산, 제7호 - 피보험자에 대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다만, 외과적 수술 그 외의 의료처치에 의해서 생긴 상해가 당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해의 치료에 의하는 것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호 - 피보험자에 대한 형의 집행, 제9호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주4), 제10호 - 지진이나 분화 또는 이로 인한 해일, 제11호 - 핵연료 물질(주5) 혹은 핵연료 물질(주5)에 의해 오염된 물건(주6)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제12호 - 제9호에서 제11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사고 또는 이로 인한 질서혼란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고, 제13호 -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는 피보험자의 형집행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동약관 제10호부터 제13호는 지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한 사고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동약관 제3조 제3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호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sup>52)</sup>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상해사고에 대해 동약관 동조 제4호 다목의 마약 등 약물흡입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유추적용할 수도 있다. 결국 일본상해보험보통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3. 각국 입법례의 비교 및 시사점

#### (1) 입법례의 비교

먼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상해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독일은 ① 급격한 외부의 사건, ② 우연성, ③ 건강상의 피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한편, 일본은 ① 급격성, ② 우연성, ③ 외래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독일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급격한 외부의 사건’은 일본의 ‘급격성’과 ‘외래성’ 요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우연성’은 두 국가의 공통된 요건이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일본과는 다르게 ‘건강상의 피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강상의 피해는 상해로 인한 결과의 발생 즉, 손해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상해의 성립을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독일과 일본이 같으나, 이에 더해 독일은 건강상의 피해라는 손해의 발생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법상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독일보험계약법은 제183조에서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를 의미함)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만 보험자를 면책하는 반

52) 각성제단속법(覺せい劑取締法) 제19조 및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아편법(あへん法), 제9조 및 제52조의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제64조의2 등에 해당한다.

면, 일본보험법은 제80조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에 더해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도 보험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고의로 초래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점은 독일과 일본이 같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초래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해보험약관상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에 대한 보험자 면책사유의 존재와 관련하여 독일상해보험약관이 제5.1.1조에서 의식을 손상시키는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사용에 따른 의식장애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을 보면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상해보험보통보험약관이 제3조 제3호에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을 보면 일본 또한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시사점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의 성립과 보험법상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① 상해의 성립요건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초래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내용은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4월 약관개정 이후로 ‘형법상 범죄행위나 마약약물 흡입 중 사고와 같은 면책사유가 각종 상해보험약관에서 삭제됨에 따라 독일 및 일본과는 달리 그와 관련한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상해보험에서도 독일 및 일본과 같이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를 비롯한 일정 영역의 범죄행위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IV. 개선방안

### 1.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적 면모에 따른 중과실 면책 가능성

상해보험은 ①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라는 점, ②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보험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상법체 계상 인보험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만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

그런데 ① 상해보험은 정액보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 정액보험 또는 비정액보험으로 구분되는 점, ② 상해라는 보험사고는 인보험상 보험사고의 특징인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아닌 손해보험상 보험사고의 특징인 ‘발생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점, ③ 상해보험 중 상해사망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고가 일회적으로 발생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보험계약이 종료되지만, 상해사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바로 종료되지 않는 점, ④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행사(청구권대위)할 수 있는 점(상법 제729조 제2문)<sup>53)</sup> 등을 고려하면 상해보험이 반드시 인보험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sup>54)</sup> 그리고 보험실무 및 판례상 상해보험의 손해보

53) 다만, 상해보험의 종류 중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비정액형 상해보험이라 할 것이다(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9, 814-815쪽 참고).

54) 이러한 면모는 상해보험의 종류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상해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순정액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상해보험이다.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해사망보험이 이에 속한다. 이는 생명보험과 같이 완전한 인보험의 성격을 나타낸다. 둘째는 준정액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상해보험이다.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해후유장해보험이 이에 속한다. 이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 셋째로 비정액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상해보험이다. 손해보험형상해보험이라고도 하며, 상해로 인해 사용된 치료비나 입원비의 실제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해의료비보험이 이에 속한다. 이는 완전한 손해보험의 성격을 나타낸다(이진수, “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18쪽).

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상해보험에 손해보험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적어도 상해사망보험을 제외한 비정액상해보험(손해보험형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만이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도 면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보험법 제80조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이 ① 보험의 분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따라 상해보험은 명확하게 인보험으로 분류되는 점, ② 상해보험에 대해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상법 제739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상해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를 면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당장에 손해보험과 같이 보험자 면책사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해석을 지양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에 대한 일반적 법감정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 2. 상해보험약관상 반사회적 행위의 면책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 판례는 한정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 그와 같은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률 규정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즉, 피보험자의 법률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비록 사고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개별 피보험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나 일반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해보험에서도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자를 면책하는 것이 사회정

55) 권기울,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 보험편”(미발간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08, 111-114쪽 참고

책적으로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상법 규정의 틀 안에서 면책약관과 연계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up>56)</sup>

따라서 현행 상법체계상 상해보험에 대해 중과실 면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에도 보험자가 반사회적 행위 등에 의한 불량위험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보험약관에 일정한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계약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한 상황에 있어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비정액상해보험에만 적용가능한 중과실 면책과는 달리 상해사망보험을 포함한 모든 상해보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과거에는 각 보험약관마다 ‘형법상의 범죄행위’, ‘마약·약물 흡입, 중독 중 사고’ 등과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상해보험약관에서 이루어진 보험약관의 개정으로 이러한 면책약관이 대부분 삭제됨에 따라 보험자가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량위험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반사회적행위에 대해서는 다시금 상해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3. 상해보험약관상 마약 관련 면책사유 규정의 필요성

#### (1) 마약 관련 범죄의 확산에 따른 면책사유 규정의 필요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해보험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것이 바로 ‘무면허·음주 면책약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sup>57)</sup> 본 논문에서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보험자

56) 한기정, 앞의 책, 811쪽.

57) 양승규, “보험약관조항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 자동차자기신체사고보험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박영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2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김영국,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보험법학회」 제10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외 다수.

의 면책만을 검토하고자 하는바 무면허·음주 면책약관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약에 관한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약(narcotics)이란 미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기복용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sup>58)</sup> 이러한 마약의 종류에는 아편·모르핀·코카인·헤로인·코데인·페티딘·메타돈·LSD 등이 있으며, 최근 신종마약류로 이바·엑스터시·카트·GHB·엑상대마 등이 등장하고 있다.<sup>59)</sup> 이 같은 마약은 의료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sup>60)</sup> 우리나라는 소위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의 반입 및 마약에 관한 범죄발생이 낮은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 마약 관련 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마약의 복용 및 남용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마약류사범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계속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되다가 이후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 2019년 16,044명으로 계속 1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sup>61)</sup> 또한 인구 10만 명 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되는 인원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는 그 수치가 20을 넘으면 급속한 확산 위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이미 마약류범죄계수가 20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sup>62)</sup> 이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8) 대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9, 8쪽.

59) 이러한 신종마약류의 경우 환각효과는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 그 반입 경로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염건웅,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76호), 한국법학회, 2019, 279쪽).

60) 염건웅, “마약의 종류와 국내 마약실태”, NSP 통신, 2012. 02. 02. 칼럼기사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2872>) 참조.

61) 대검찰청, 앞의 책, 70쪽.

62) 이상용,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총서 04-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3쪽.

<표 4-1> 마약의 분류와 남용효과

분류		종류	남용효과
마약	천연마약	아편, 헤로인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
		코카나무 잎, 코카 잎	흥분, 정신혼동
	합성마약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벤조모르핀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
향정신성 의약품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암페민류, 페플루라민, 암페트라몬	환시, 환청
	환각제	LSD, 페이요트, 사일로사이빈, 메스칼린	환각, 예츨불허행위
	억제제	바르비탈염류제, 非바르비탈염류제, 벤조디아제핀염류제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시시), 대마수지기름(해시시오일)	도취감, 약한 환각

※ 출처 : 박동균/장철영, “우리나라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73쪽 참고

<표 4-2> 국내 마약사범 적발 현황

(단위 : 명)

1999년 - 2002년	2003년 - 2006년	2009년	2011년 - 2014년	
10,000 이상	7,000선 감소	10,000 이상	10,000 이하 억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916	14,214	14,123	12,613	16,044

※ 출처 : 대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9, 70쪽.

<표 4-3> 연령별 마약사범 증가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상	총계
2017년	119 (0.8%)	2,112 (15.0%)	3,676 (26.0%)	3,919 (27.8%)	2,589 (18.3%)	1,491 (10.6%)	217 (1.5%)	14,123
2018년	143 (1.1%)	2,118 (16.8%)	2,996 (23.8%)	3,305 (26.2%)	2,352 (18.6%)	2,352 (18.6%)	242 (1.9%)	12,613
2019년	239 (1.5%)	3,521 (21.9%)	4,126 (25.7%)	3,487 (21.7%)	2,554 (15.9%)	1,598 (10.0%)	519 (3.2%)	16,044

※ 출처 : 대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9, 234쪽.

이처럼 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는 상당히 만연해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의 행위자가 유흥업 종사자나 폭력조직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회사원, 무직자,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여성과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sup>63)</sup> ② 마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음에 따라 마약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는 점, ③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뇌나 중추신경계의 영구적 손상, 심혈관계 이상, 환각 또는 환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자해 및 타해를 행하여 상해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점, ④ 마약이 중독성 있는 물질임에 따라 마약 투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해보험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sup>64)</sup> ⑤ 마약의 복용 및 남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마약 투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고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감정이나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으며, 보험의 선의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 관련 면책사유를 상해보험약관에 규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할 필요성은 더 강하게 대두된다.

63) 엄건웅, 앞의 논문, 283쪽.

64) 박동균/장철영, “우리나라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75쪽.

그리고 앞서 살펴본 본 대상판결과 같이 상해사망보험에서 마약 투약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최초의 판결례와 마약 관련 면책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약관에 마약 관련 면책사유를 규정한다면 보다 더 건전한 보험제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자의 이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마약 관련 면책사유의 규정 및 운용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되는 면책사유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배제사유 또는 책임면제사유로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에 존재하는 차이에 더해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를 나눌 것인지, 그리고 마약 관련 면책사유는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 ①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의 개념과 구분 기준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의 구분 기준을 논하기에 앞서 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담보배제사유(Exclusion)<sup>65)</sup>란 보험사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사고 즉,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애초에 보험의 담보위험범주에 편입시키지 않아 보험자의 면·부책 판단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고를 말한다.<sup>66)</sup> 한편, 책임면제사유(면책사유, Exception)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고이나, 보험자의 불량위험 인수를 방지하여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보험사고의 원인과 결부시켜 보험자를 면책하는 사고를 말한다.<sup>67)</sup>

65) 담보배제사유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각하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66) 김성태, 앞의 책, 265쪽에서는 이를 ‘부담보위험’이라고 하고,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139쪽에서는 ‘담보위험제외사유’라고 부른다.

67)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357쪽에서는 담보예외(Exception)와 담보배제(Exclusion)로 칭한다. 다만, 양승규, 위의 책, 146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의 법규위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면책사유가 담보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면책사유의 유효성 인정의 용이성 여부와 상법 제663조의 적용 여부에 있다.<sup>68)</sup> 먼저, 면책사유를 담보배제사유로 본다면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의 사고 자체를 처음부터 보험자의 담보범위에서 배제함에 따라 면책사유의 유효성 인정이 쉬워지고, 원칙적으로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 면책사유를 책임면제사유로 본다면 우선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와 그 원인과의 관련성을 따지게 되어 해당 면책사유를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효로 볼 것인지의 판단 문제가 발생한다.<sup>69)</sup> 그리고 해당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단하더라도 다시금 상법 제63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이에 반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무효가 된다. 즉, 면책사유가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해당 면책사유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해당 면책사유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의 적용에 따라 다시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면책사유를 통해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해당 면책사유가 책임면제사유가 아닌 담보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

이처럼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는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보험약관에 면책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구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담보배제사유는 상품 설계 시부터 담보하는 범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킨다는 보험자의 명

---

상법은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황면책사유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황면책사유’와 ‘원인면책사유’를 보험약관 면책사유의 구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사고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위의 사고 자체를 담보범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여기에서의 담보배제사유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한편, 유주선, 「보험법」(최신개정판), 씨아이알, 2018, 125쪽에서는 보험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한을 ‘책임면제사유’로, 보험사고 결과에 대한 제한을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대표적인 상황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상해보험약관 전반을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논문과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다.

68)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의 구분과 관련하여 어떤 사유가 담보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책임면제사유로 판단하여 보험자의 책임 인정 여부를 다룰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9) 박세민, 앞의 책, 283쪽.

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보험료 산출 시에도 이를 고려하여 반영함이 필수적이어야 한다.<sup>70)</sup> 다만, 담보배제사유는 해당 사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면 보험제도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면책사유를 담보배제사유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위와 적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에서는 모든 상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한다는 취지를 ‘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에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를 구분 없이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2010년 4월 대대적인 약관개정을 통해 담보배제사유로 여겨지는 면책사유들이 대부분 삭제되면서 면책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약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는 물론이고,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가 ①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담보배제사유’로, ② 불가피한 상해이거나 위험의 빈도나 심도가 높은 행위인 경우에는 ‘책임면제사유’로 구분하여 규정 및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질병·상해보험의 면책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의 구분 기준과 유형

구분	기준	유형
담보배제사유	상해 미해당	- 질병, 정신질환 <sup>71)</sup> , 심신상실
	반사회적 행위 <sup>72)</sup>	- 형법상 범죄행위 <sup>73)</sup> , 폭력행위 <sup>74)</sup> , 마약 등 약물중독
책임면제사유	우연성의 결여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sup>75)</sup>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함)
	위험심도·빈도↑	- 지진 등 천재지변, 전쟁 등 사태, 핵연료, 방시능 위험 - 전문 등반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오토바이 운전, 직무상 선박탑승 중 사고
	불가피한 상해	- 임신·출산, 외과적수술 등 의료처치 <sup>76)</sup>

70) 김성태, 앞의 책, 267쪽, 이준교/정찬목, 앞의 책, 358쪽에서도 ‘부담보위험’을 일단 보험자의 보상 대상위험에 해당되는 ‘면책사유’와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② 담보배제사유로서의 ‘마약 관련 면책사유’

마약을 복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 71)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에서는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다른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다. 다만, 2010년 4월 개정약관에서는 정신질환 면책사유를 삭제한바 이러한 취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고의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해당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조규성,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6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1, 215쪽).
- 72) 담보배제사유의 기준 중 반사회적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피보험자의 형집행(대표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이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게 된 원인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형집행 행위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형집행’을 별도의 담보배제사유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형집행의 경우 1997년 이후 이루어진 적이 없어 거의 사문화 된 점을 고려한다면 ‘피보험자의 형집행’을 담보배제사유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73) 범죄행위를 면책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14252 판결 참조).
- 74)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피보험자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면책이다. 다만, 범죄행위나 폭력행위가 연관된 상해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준교/정찬목, 앞의 책, 294쪽).
- 75) 이와 관련하여 자살이라는 고의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법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에 더해 자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살을 책임면책사유라고 보기보다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로 보아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사고라고 할 수 없는 즉, 담보배제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박세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 「고려법학」 제8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295, 297쪽).
- 76) 판례의 경우 구약관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를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해당 상황의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이와 같이 통상적인 위험의 증가분을 예견하고 그 예견된 위험의 증가분을 사전에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배제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5663 판결 참조)고 하여 담보배제사유로 취급하였으나, 개정약관에서는 동 면책사유가 삭제됨으로 인해 상해사고의 요건인 ‘우연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면책사유를 판단하여야하므로 현재는 책임면책사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해 엄격히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이며, ② 뇌나 중추신경계의 영구적 손상, 심혈관계 이상, 환각 또는 환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신체의 상해나 심각한 경우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불량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비율의 부당한 상승을 초래하여 전체 보험계약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 또한 높이게 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약관에 마약 관련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면책사유를 담보배제사유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면제사유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마약을 복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①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윤택성에 반하는 행위인 점, ② 보험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행위인 점, ③ 실정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보험자의 담보위험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담보배제사유'로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4. 입법적 개선방안

##### (1) 상법 개정 제안

상해보험에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더해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현행 상법의 체계상 시기상조이며,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sup>77)</sup>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중과실 면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고도의 사고발생위험성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윤택성에 반하는 행위라면 보험자를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서 상법 732조의2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sup>78)</sup> 구

77)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가12 결정.

78) 한기정, 앞의 책, 730쪽, 가령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비록 고의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보험자 면책을 허용함이 타당할 수 있다.

체적으로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에 단서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법 개정과 함께 상해보험약관에 있어 면책사유 추가규정이 이루어진다면 보험자가 반사회적 불량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해사망보험을 제외한 상해보험에 대해 그러한 면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별도의 약정을 전제하도록 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상법	개정안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u>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현행과 동일

## (2) 상해보험약관 개정 제안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면책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행 상법 체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험자가 불량위험을 인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상해보험약관에 개별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책약관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어 불량위험 인수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약 관련 면책사유를 상해보험약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해당 사유는 면책사유 중에서도 담보배제사유로 규정해 구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다루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① 2013년 이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미약 또는 약물 복용 중 사고를 면책사고로 규정하였던 점,<sup>79)</sup> ② 2010년 이전 장기손해보험약관의 경우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③ 다만, 판례는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인한 인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sup>80)</sup>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범죄행위’보다는 ‘미약 또는 약물 복용 중 발생한 사고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해보험약관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1)</sup>

현행 상해보험약관	개정안
<p>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p> <p>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 <p>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p>	<p>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p> <p>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 <p>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p>

79) 남원식 외 6인, 「조문별 해석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증보), 한울출판사, 1998, 326쪽, 이 규정은 구도로교통법 제42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약물운전금지의 규정과 일치된다.

8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등.

81) 여기에서의 약관개정은 기존의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에 더해 앞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이를 다시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개정은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미약에 관한 면책사유만을 다루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추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상해보험약관	개정안
<p>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lt;개정 2014.12.26.&gt;</p> <p>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p> <p>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 <p>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p>	<p>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lt;개정 2014.12.26.&gt;</p> <p>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p> <p>4. <u>마약 또는 약물 복용 중 발생한 사고</u><sup>82)</sup></p> <p>5. <u>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u></p> <p>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p>

### (3) 보험실무상의 적용

위와 같은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에서 마약이나 약물 복용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상해사고의 경우 보상책임에 대한 분쟁이 남을 수 있다. 즉, 피보험자로서는 설사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험사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등 상해담보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를 면책사유로 규정한다. 이 때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해당하려면 음주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 등을 복용하여 체내에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상실무상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운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개개의 사건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sup>83)</sup>

따라서 상해사고에서도 마약이나 약물 복용을 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마약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에 방점을 두되, 투약 후 경과시간, 상습성 여부, 사고의 구체적 정

82) 해당 면책사유는 상해보험약관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등 상해담보약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83) 남원식 외 6인, 앞의 책, 326쪽.

황, 상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sup>84)</sup>

## V. 마치며

음주 무면허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한정적 무효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10년 대폭적인 약관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을 비롯한 각종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미약·약물중독 면책약관’,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면책약관’ 등이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불량위험의 인수나 범죄행위 또는 고도의 위험행위에 대하여 보험보호를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 피보험자의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됨에 따라 높아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중과실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일본보험법 제80조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① 상해보험을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상법의 체계와 상해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법감정을 생각한다면 당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② 실사 상해보험에 대해 중과실 면책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인정 범위는 상해보험 중에서도 상해사망보험을 제외한 비징액상해보험에만 국한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84)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나 보험자 면책을 달리 하는 것과 같이 미약 또한 그 정도나 중독성이 약한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효용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마약의 종류에 대하여 그 효과와 중독성의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단계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 현재 모든 마약류의 투약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의 균형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과는 달리 반사회성의 정도가 훨씬 심각한 마약 투약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제도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견해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선불리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상해보험에 대해 중과실 면책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상해보험약관상에 보험자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①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비해 개정이 유연하므로 상해보험에 인정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를 개별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점, ② 면책사유는 상해사망보험을 제외한 비정액상해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중과실 면책과는 달리 상해사망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 전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자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불량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면책사유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약 투약 행위는 ① 뇌나 중추신경계의 영구적 손상, 심혈관계 이상, 환각 또는 환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자해 및 타해를 행하여 상해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② 마약이 중독성 있는 물질임에 따라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상해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① 피보험자가 마약 투약 후 자해로 사망하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정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하급심이긴 하지만 피보험자의 ‘마약 복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이자 나아가 담보배제사유로 확인한 최초의 판례가 존재하는 점, ② 독일 및 일본의 경우 상해보험약관에 마약약물 흡입 및 중독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또한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해당 면책사유는 가장 전형적인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책임면책사유’가 아닌 ‘담보배제사유’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상법과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①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적 행위

등과 같이 상해보험약관에 추가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의 선정과 적정성 검토 ② 기존의 면책사유와 추가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의 '담보배제사유'와 '책임면제사유'로의 구분을 위한 기준과 체계 마련 등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상해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 전체에서 보험계약의 선의성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2.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남원식 외 6인, 「조문별 해석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증보), 한울출판사, 1998.
- 남원식/김형진/안승태, 「실무자들이 쓴 자동차보험이론」 (개정·증보판), 한울출판사, 2005.
- 대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9.
-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엘림G&P, 2006.
- 유주선, 「보험법」 (최신개정판), 씨아이알, 2018.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역,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9.

#### (2) 논문

- 김영국,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보험법학회」 제10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 김일욱/김순행/박진실, “독일국가전략의 고찰의 통한 한국미약정책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20.
- 김은경,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08.

- 김형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노일석, “미국의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보험”, 『보험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 박동균/장철영,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 박세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 ”, 『고려법학』 제8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 박영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2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 양승규, “보험약관조항의 무효를 신고한 대법원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 자동차자기신체사고 보험을 중심으로 - ”, 『보험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 염건웅,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통권 제76호), 한국법학회, 2019.
- 이상용,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총서 04-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이진수, “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조규성,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6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1.
- 최병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1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_\_\_\_\_, “마약투약과 상해사망여부 - 서울중앙지법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 2. 외국문헌

Gesetzen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VVG, 11., Oktober, 2006.

Meschkat/Nauert, VVG-Quoten Leistungskürzung in der Sach- und Kaskoversicherung sowie KH-Regress-, Lucherhand, 2008.

戶出正夫, “商法第641條所定の重過失の意味”, 「石田滿先生還曆記念論文集：商法保險法の現代的課題」, 文眞堂, 1992.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解説保險法」, 弘文堂, 2009.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説」, 有斐閣, 2010.

山下友信, 「保險法」(第4版), 有斐閣, 2019.

<Abstract>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Insurers in Insurance Accident**

**- Focus on Seoul High Court on Dec. 5th, 2018, 2027704 ruling -**

**Kim, Hyung Jin\* · Seo, Go Eun\*\***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been issued with limited invalidation regarding the exception clause of the drinking and unlicensed driving. Since then, the reasons of exemption of the insurer's were deleted sequentially through the revision of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2010, such as "the exception clause of drinking or unlicensed driving", "the exception clause of drug addiction", and "the exception clause of criminal or violent acts under criminal law". This has result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 free decision-making of the insurer who can refuse to take over the insurance for highly risky behavior is fundamentally blocked. As a result, the scope of liability of insurers has been excessively extende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payments. This has caused an excessive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which has bad influence even on good policyholders.

Therefore, in this paper, we have looked at ways to improve this unreasonable situation. First, we can think of applying a exemption of gross negligence to accident insurance. However, this is difficult to apply immediately, considering the system of the commercial law that considers accident insurance as personal insurance and the scope of the exemption of gross negligence that are applicable only to non-fixed accident insurance.

If so,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way is to limit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within a certain range by stipulating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in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Konkuk University Ph.D.

\*\* Kyunghee University Law school Ph.D.

As a result, we looked at whether drug us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needs to be stipulated as a exception clause based on the domestic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existence of the exception clause of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drugs can cause self-harm and other harm due to side effects such as hallucinations or auditory hallucinations, there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accidents. Also, if the illegal drug use continues due to its addictive nature, insurance accidents may occur repeatedly. Moreover, since illegal drug use is strictly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illegal drug use” must be stipulated as the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in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And because this exception clause is illegal acts, it should be distinguished as “exclusion” rather than as “exception”.

As such, “illegal drug use” should be stipulated in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as a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However, since the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are not limited to drug-related activities, additional reviews for other exception clause are required. And after the exception clauses of the insurer are determin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systematically separate and manage the exception clauses by dividing them into “exclusion” or “exception”.

**Key Words** : accident, accident insurance, exception clause, exclusion, exception, drugs, drug addiction, self-harm, suicide, gross negligence, amended terms and conditions